새로운 희망찬 군민 곡성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번호	안전건설과-26755
		제정일자	2025.08.20.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Rev/Page	

1. 목 적

본 절차는 수급인 등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조치 의무화 등으로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및 적절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곡성군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종사자, 수급인 등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우리 군이 직접 소유·운영·관리하는 시설·설비·장소

※ 일상경비 및 1인 수의계약 포함 지출 예정인 위험도가 높은 사업(예초작업, 임목제거, 상·하수 맨홀 내부 청소 등), 재해율 및 위험도가 높은 사업(단기 30일이내 사업포함)

3. 용어의 정의

3.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계약의 명칭(용역·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을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관련성 있는 경우 : 생산설비 등 정기적·일상적 정비·유지·보수 작업 등 · 관련성 없는 경우 : 경비·청소·조경 등 용역 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운영 등

※ 도급인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

3.2 수급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을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계약을 말한다. (예. **사업장, 혹은 사업체 등**)

3.3 용역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예. **업체가 아닌 노무만 제공하는 형태**)

3.4 위탁

설계, 시설, 판매, 제조, 교육 등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사업자,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예. **군의 업무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형태 [시설물 유지관리 등]**)

3.5 직영

군청에서 직접 직영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 **공무원, 공무직이 파견하여 근무하는 체육시설 등**)

3.6 건설공사에서 도급과 발주의 구분

건설공사에서 <도급>과 <발주>의 구분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포함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로서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고, 도급받은 사업주가 도급인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 ■ **건설공사의 경우:** - **부서가 직접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 도급인(안전보건 확보 의무)** - 도급받은 사업주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 도급인(이때, 부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의무만 이행)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책임자

가. 공사발주 및 도급사업, 수급인 선정 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마련
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자에게 권한의 부여
다. 인력, 예산 등 자원의 지원

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의 제·개정
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기기준 및 절차 이행
다. 인력, 예산 등 자원의 지원

4.3 안전관리부서장

가.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의 제·개정 실무
나. 경영책임자 보좌 및 위임업무의 수행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이행 여부 점검 및 보고

4.4 해당 사업 부서장(발주부서)

가. 도급(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 및 관리
나. 설계도서, 유해위험정보 등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점검
라. 안전관리비 적정반영 및 사용실태 점검
마.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바. 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 및 관리

4.5 계약담당부서장(계약부서)

가. 입찰시 공고문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다. 해당 부서장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5.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발주부서는 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적정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 작업자의 안전·보건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제 2025-11호) 참조

가. 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나. 공사 종류 및 계상기준[2025. 1. 1부 적용]

구분 /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영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적용비율 (%)	기초액(원)		
건축공사	3.11	2.28	4,325,000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000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	1.64	1.78

* 건축공사: 건축물 건설공사, 교량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기계·기구장치 공사 등
* 토목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터널 신설공사 등
* 중건설공사: 철도.궤도 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 및 역사, 송전선로 공사 등
* 특수 건설공사: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다.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 대상액×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 발주부서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하여서는 안되며, 기상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등 돌발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용역 등과 같은 사업이 재해 발생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계약심사 원가심사 시 안전관리비 적정요율 등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도급·용역·위탁사업 시행 시 최초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하다.

구분	주요내용
계획단계	① 안전관리비 반영 ② 과업지시서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포함 ③ 제안서 작성시 정량평가 항목 (산업재해율) 추가
공고단계	① 입찰공고시 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명시
계약단계	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② 계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기재
사업단계	①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평가표 착공 신고서에 포함 징구 ③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준공단계	①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 점검 및 정산

6.1 도급·용역·위탁사업 단계별 주요 업무

6.1.1 계획단계(발주부서)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 안전관리비 및 공사기간 반영

※ [절차서 5.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참조

- 발주부서는 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정 안전관리비를 반영해야한다.
- 발주부서는 용역, 위탁 등 사업이 재해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기상상황, 급박한 위험상황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명시

-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법상 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예시)>

- 과업수행자는 00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곡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 작성시 정량평가 항목(최근3년간 산업재해율) 추가

- 발주부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정량평가 항목에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 시]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안)

구 분	항 목 별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비고
정량적 지표	소계		20	
	1.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2. 기술투입인력	- 기술자 투입인력 현황	5	
	3. 책임성	- 사회적 책임	5	
	4. 성실성	- 계약질서 준수 정도	4	
	5. (가점항목)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또는 (감정항목)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낮을 경우 가점 -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을 경우 감점	+ 0.5 ~ - 0.5	

6.1.2 공고단계(계약부서)

가. 입찰공고 시 모든 공고문에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명시

- 계약부서는 입찰공고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등 수급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문 명시사항 (예시)>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6.1.3 계약단계(계약부서)

가. 계약부서는 계약체결 시 낙찰자(업체)로부터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 시 계약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기재하여 도급·용역·위탁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서 명시내용 (예시)>

제0조(안전・보건 확보)
① 위탁자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6.1.4 사업단계(발주부서)

가. 발주부서는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 대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 기준 미달 시 충족 시까지 작업을 금하고, 보완 등을 통해 충족 할 수 있도록 조치
- 업체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자체양식의 평가자료 활용

나. 발주부서는 수급업체로부터 착공시 착공신고서, 안전보건 평가표[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토록 사전에 알리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주기는 다음과 같다.

사업추진 기간	점검주기
6개월 이상 도급·용역·위탁사업	연2회(상·하반기)
6개월 미만 도급·용역·위탁사업	추진기간 내 1회 이상

라. 발주부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대상) 자치단체장
- (역할)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총괄
-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 및 집행 감독,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 우려 시 작업 중지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협의체 구성(4인 이상)
- 도급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부서장) 1인, 관리감독자(팀장 또는 직원) 1명
- 수급인: 대표자 1인, 종사자 1인
- (운영)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결과 기록 및 보존[별지 제5호 서식]

※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 (협의사항)

- ■ 작업의 시작 시간
-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기타)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요청사항 반영

3) 작업장 안전.보건 현장 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2조)

구 분	점검주기	실시주체	점검일지
순회점검	주 1회이상 (건설업, 제조업은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	[별지 제6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점검	분기 1회 이상 (건설업은 2개월 1회 이상)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점검반 구성)	[별지 제7호 서식]

- 순회 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대상 작업장

구분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구분	시행규칙 제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 (선박내부, 인화성 물질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 특수화학설비, 가연물 장소에서의 용접·용단 장소)
2	기계·기구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3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4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8	석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5	밀폐공간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6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하는 장소		

4)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 유해 위험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예시) >

안전작업 허가대상공지	⇨	작업허가 요청	⇨	안전조치확인 안전교육실시	⇨	작업허가 승인	⇨	작업준비확인 작업개시
도급인		수급인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수급인

□ **안전작업허가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밀폐공간 출입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 작업 시
- 굴착, 전기, 고소, 중장비 사용, 방사능 사용 작업 시

5)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의 현장 확인

6) 위험장소 예방 조치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 조치 대비
-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대피방법 훈련

7)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대상작업) 위험물질 취급 관련, 질식위험.붕괴우려 장소 작업 시

-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등의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 토사·인공구조물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 (제공자료)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8) 작업환경 측정

- (측정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화학적인자(188종)
- ■ 8시간 가중 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질적 인자(2종)

- 수급인이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9)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위험성평가 포함 반기 1회 이상)

- (정의)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

구 분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정의	기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1) 기계·기구·설비 등 신규 반입, 변경시 2) 작업방법, 작업절차 등 변경 시 3)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최초평가 이후 실시한 위험성평가
시기	1회 / 최초	발생 시	1회 / 년
실시내용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 (실시계획서 포함) 2.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자 교육 및 문서 기록·보관		

10)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 준수

11)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강화
-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에서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를 모두 포함

12)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6.1.5 준공단계(발주부서)
가. 발주 사업 부서는 사업 준공 또는 완료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7.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7.1 점검주체 및 방법
가. 경영책임자는 해당 부서 및 계약부서가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인 등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다만, 경영상의 일정 등으로 점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나. 경영책임자는 점검의 실효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 점검 시 안전관리부서장과 동행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고, 미이행 시 동 절차서 6.4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2 점검주기

경영책임자는 반기(상반기:1.1~6.30.까지, 하반기:7.1~12.31.까지) 1회 이상 점검하여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 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7.3 점검내용

가.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준수 여부
 1)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
 2) 평가 시기의 적절성(입찰단계)
 3) 평가결과의 입찰 반영 여부(계약부서)

나.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1) 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기준의 적절성
 2) 안전보건관리비용의 지급 여부
 3) 안전보건관리비용의 적절한 사용확인 여부 및 보관의 적절성

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1) 충분한 공사기간의 반영 여부
 2) 비용절감 목적 등으로 공사기간의 일방적 결정 및 단축여부
 3) 공사기간의 연장 여부(기상악화, 재해발생 급박한 위험, 돌발상황 발생 시)
 4) 수급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착공 또는 공사지연 여부

7.4 미이행시 조치

가. 경영책임자는 점검과정을 통해 해당 담당부서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행의 지시
 2)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3) 교육훈련 실시
 4) 관계자 인사고과 반영
 5) 기타 이행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

나. 해당 담당부서는 미이행 사항에 대한 개선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즉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경영책임자는 개선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5 평가 및 개선활동 반영

경영책임자는 담당부서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을 지속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 평가 및 개선 절차서"에 의거 매년 반영하여야 한다.

가. 계약부서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지의 여부와 지속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 및 개선방안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지의 여부와 지속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 및 개선방안

8. 문서 및 기록보관

업무수행 문서 및 기록에 관하여 5년간 보관한다.

9. 참고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표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별지 제7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별지 제8호 서식]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사항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안전건설과-26755
		제정일자	2025.08.20.
		개정일자	
		Rev/Page	

[별지 제1호 서식]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평가자료로 활용**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은 적정한가?	5	
계획수립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이 적절한가?	10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수준이 적정한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항목 숙지 및 이행 계획이 적절한가?	10	
이행확인	안전점검 등 개선조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계획이 적절한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5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10	
비상대책	비상대응 및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 미만인가?	2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은 적정한가?	5	3	1

① 우수
- 발주기관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이 적절한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발주기관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발주기관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수준이 적정한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항목 숙지 및 이행 계획이 적절한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등 개선조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10	5	1

① 우수

-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계획이 적절한가?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발주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발주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발주기관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대응 및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 미만인가?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번호	안전건설과-26755
		제정일자	2025.08.20.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Rev/Page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사업체 자체 양식 가능) ※ 안전보건평가 자료 활용

▣ 계약명 :	▣ 업체명 : 0000
▣ 작업일시 : *착공일로부터 14일간*	▣ 예정금액 : 금00000원
▣ 작업장소 : *본관동 계단, 옥상 등*	▣ 소재지 : 000000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1명*	▣ 대표자 : 홍길동 (서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❶ 안전보건방침 *안전작업 및 무재해 원칙*

❷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

■사용 기계·기구, 작업공정의 종류 및 관리계획	■안전작업허가 계획
- 용접기, 절단기, 햄머드릴등	*- 밀폐공간, 화기 작업 시*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 굴착, 전기, 고소, 중장비 사용 등 작업 시*

❸ 역할 및 책임(비상연락)

안전보건조직				
직책	**성명**	**연락처**	**역할 및 책임**	**비고**
	000	000-0000-0000	*책임자 현장대리인*	
	000	000-0000-0000	*관리감독자*	

▣ 실행수준

❹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용접 및 절단	*1. 작업명 : 용접 및 절단*
① 용접작업으로인한 작업자의 호흡기질환 유발	*① 용접흄 집진기 설치*
② 핸드그라인드 사용시 작업자의 손의 절단사고	*② 핸드그라인드 방호덮개 설치*
③ 이동통로 미확보로 작업자의 통행 어려움	*③ 이동통로 및 작업 구역 표시*

❺ 안전점검	**❻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 확인절차
- 개인보호구 및 착용 여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이후 개선방안 수립*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위험성 평가 등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 발주기관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개선방안 수립 후 기록관리*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번호	안전건설과-26755
새로운 희망찬 군민 곡성		제정일자	2025.08.20.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Rev/Page	

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강사 : 관리감독자 000**
- **교육내용**

1)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비 점검

2)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 **기록관리 :** *매 작업 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 운영관리

❽ **신호 및 연락체계**	*감독관 : 홍길동 000-0000-0000* *작업자 : 홍길동 000-0000-0000* *- 밀폐공간, 화재 등 위험작업 시 신호체계(무전기 사용 등)*
❾ **위험물질 및 설비**	*- 기계·기구명 / 작업장소 / 수량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유해위험물질명 / 작업장소/ 사용량 / 저장방법 / 사용시 주의사항 등*
❿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병원 : 000병원(000-000-0000)* *- 고용노동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000-000-0000)* *- 소방서 : 곡성소방서(119)* *- 경찰서 : 곡성경찰서(112)*

▣ 재해 발생 수준

⓫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작성자 **회사명 : 00000** **직책 : 대표** **성명 : 홍길동**(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곡성군의 「계약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표

기관명		사업명	
점검일자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항 목	점검결과		점검내용
	적정	미흡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적정성			
2.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 계약(공고) 시 안전보건 확보 조건 명시			
5.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 안전보건점검			
-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6.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정산결과			
7. 기타(건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회의장소	0000 회의실
일　　시	20　.　.　.　00:00 ~ 00:00

협의사항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참석자명단

도급인	성명	확인	수급인	성명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회의사진]	

새로운 희망찬 군민 곡성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번호	안전건설과-26755
		제정일자	2025.08.20.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Rev/Page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서식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기관명		사업명	
점검일자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구분	점검항목	세부내용	적정	미흡	비고
1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기관(사업장)내 통로가 비좁거나 물건을 방치할 경우, 이동 시 넘어짐 사고 위험이 있어 정리정돈 및 충분한 통로 확보			
2	보행 전 위험요인 확인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짐 위험이 있고, 이동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발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위의 위험요인 확인			
3	계단이동시 천천히 이동	계단을 통행할 때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			
4	사다리 작업시 2인1조 작업	사다리는 바닥이 평탄한 장소에 설치하고, 다른사람이 사다리를 잡고 작업			
5	높은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대가 없는 상부 작업 또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 시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대 걸이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6	차량통로 내 안전조치	기관(사업장) 내 차량 등으로 인해 보행자를 보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사경 또는 경고표지 부착 등의 관리			
7	정리정돈 생활화	기관(사업장) 내 사무실, 창고의 공간이 비좁을 시 넘어짐, 부딪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정리정돈			
8	기계설비 회전체 덮개 설치	펌프, 모터, 커플링, 콤프레샤 등 회전체에 접촉할 경우 협착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울 등 방호장치 설치			
9	작업시작전 및 작업완료 후 스트레칭	출근 직후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 (작업 후에도 실시)			
10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2인 1조 작업	자재 등 무거운 중량물(5kg이상)을 들 때 허리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작업자세로 들거나 2인 이상이 작업			

[별지 제7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점검표(서식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기관명		사업명	
점검일자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구분	분야	세부내용	적정	미흡	개선필요 사항	비고
1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 도급·수급인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여부 ·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 교육결과 기록보존 상태				
2	안전보건 관리비용	· 안전보건 관리비용 적정계상(편성)여부 · 안전보건 집행실태(타목적, 용도외 사용 등) · 항목별 적정비용 집행 여부				
3	개인보호구 지급	· 보호구 적격품(검정) 구입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방진마스크, 귀마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4	기타 안전보건대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이행여부 등 · 위험물(인화성물질 등) 관리상태 · 화재예방 대책 (소화기 비치대상 연락망 편성 등) · 금지, 경고 등 안전보건표지 설치상태 등 · 자재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상태				

[별지 제8호 서식]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사항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사항

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 개최 및 결과 기록·보존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② 작업장 순회점검

- 2일에 1회 이상 실시 사업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사업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③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⑥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⑦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⑧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⑨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 2개월에 1회 이상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분기에 1회 이상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⑨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